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제17353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 명확화 및 타법 개정 반영(안 제1조의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 하는 내용으로 수집 정보를 개정

나. 전자문서의 유통 및 중계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체계 개선 및 명확화 (안 제1조의5)

전담기관이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제 전환·도입을 위한 별지 서식 개정 (안 제16조의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제 전환으로 기존 지정제 서류(지정신청서, 지정서)를 인증제 서류(인증신청서, 인증서)로 서식 개정

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시설 또는 장비 변경 신고, 점검 규정 폐지
(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와 시설·장비 점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이 폐지되어, 동 규칙의 동일 규정 조항 삭제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갱신 관련 위임 조항 마련(안 제16조의5)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법에서 정하는 인증의 유효기간(3년)이 만료
되어도 그 인증의 효과를 유지하려는 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마련하고,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 ‘인증갱신 신청서(별지 서식 제15호)’ 신설

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취소 관련 위임 조항 마련(안 제16조의6)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른 인증취소 절차 마련을 위한 규정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의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
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
를 포함한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제1조의5 제목의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수수료”를 “수수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등록수수료”라 한다)”를 “수
수수료”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보관, 전자문서 유통 및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축 및 운용비

2.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보관, 전자문서 유통 및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보관, 전자문서 유통 및 증명서 발

급 등에 필요한 실비(實費)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의 “등록수수료”를 “수수료”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지정신청서”를 “인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인증신청서”로, 제2항의 “지정서”를 “인증서”로 한다.

제16조의3, 제16조의4를 삭제한다.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서식 제15호에 따른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제1항의 인증 갱신 신청서와 함께 영 제15조의15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의15제1항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의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의18제5항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 결과 및 내용
2. 법 제31조의19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의 해당 여부
3. 법 제31조의23에 따른 시정명령 기록 및 위반 여부
4. 영 제15조의15에 따라 제출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관련 서류의 변경 여부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문서 유통 및 중계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갱신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제14호 서식을 삭제하며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생략)	제1조의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현행과 같음)
1. 개인: <u>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u>	1. 개인: <u>성명, 주민등록번호</u>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 <u>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u>	2. 법인: <u>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u>
제1조의5(공인전자주소의 등록수수료) ① 전담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u>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등록수수료"라 한다)</u> 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조의5(<u>수수료 등</u>) ① ----- ----- ----- ----- ----- <u>수수료</u> ----- ----- -----.

<u>1.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축 및 운용비</u> <u>2.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u> <u>3. 그 밖에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실비(實費)</u>	<u>1.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보관, 전자문서 유통 및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축 및 운용비</u> <u>2.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보관, 전자문서 유통 및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인건비</u> <u>3. 그 밖에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보관, 전자문서 유통 및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실비(實費)</u>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u>등록수수료</u>를 산정한 후 <u>등록수수료</u>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이 <u>등록수수료</u>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u>지정신청서</u> 등) ① 영 제15조의15 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u>지정신청서</u>는 별지 제12호서	② ----- <u>수</u> <u>수수료</u>----- <u>수수료</u> ----- ----- ----- -----. ③ ----- <u>수수료</u>----- ----- ----- ----- -----.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u>인</u> <u>증신청서</u> 등) ① ----- ----- ----- ----- - <u>인증신청서</u>-----

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15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3(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신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31조의20에 따라 전자문서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시설·장비의 점검 시기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21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이 영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수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의14제2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게 하여야

-----.

② -----

----- 인증서-----

-----.

제16조의3 <삭 제>

제16조의4 <삭 제>

한다.

1. 법 제31조의21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매년 1회

2. 법 제31조의21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 변경신고일 이후부터 45일 이내

② 전담기관의 점검사실의 사전 통보 및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본다.

제16조의5 <신 설>

제16조의5(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 ①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서식 제15호에 따른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제1항의 인증 갱신 신청서와 함께 영 제15조의15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의15제1항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의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의18제5항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 결과 및 내용

2. 법 제31조의19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의 해당 여부

3. 법 제31조의23에 따른 시정명령 기록 및 위반 여부

4. 영 제15조의15에 따라 제출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관련 서류의 변경 여부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문서 유통 및 중계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제16조의6 <신 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6조의3에 따른 공인문서중계자의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까지 사업자에게 갱신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6(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산업제도과	
연 락 처	(044) 202-6141